
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신청인(채무자) ㅇㅇ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(채권자) ♦♦♦♦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신청취지

- 1.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한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카합○○○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○○. ○. ○.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피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.
- 3.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
- 4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- 1. 신청인(채무자)는 소외 ■■■의 소개로 피신청인(채권자)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고, 20○○. ○. ○. 계약금조로 금 1,000만원을, 같은 해 3. 3. 중도금조로 금 4,000만원을, 그리고 같은 해 4. 15. 소유권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잔금 5.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- 2.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사비용조로 금 5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200

- ○. ○. ○ ○ 이 방법원 20 ○ 카단 ○ 호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형 분금지가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.
- 3.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20〇〇. 〇. 〇. 〇〇지방법원 20〇〇카단〇〇〇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취소신청을 제소하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
- 4.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아무런 권원없이 또 다시 귀원에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소 명 방 법

1. 소을 제1호증 가처분결정취소판결

1. 소을 제2호증 위 판결송달증명

1. 소을 제3호증 위 판결확정증명

1. 소을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소명방법 각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신청인(채무자)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제출법원	집 행 법 원	관련법규	민사집행법 제301조, 제283 ***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첨부		
불복절차 및 기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)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가압류, 가처분